

1. 계약목적

- ① 시설과 이용자 (입소자)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 (이하 “계약”이라 한다)
-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.
가. 계약당사자, 계약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비급여 항목별 비용

2. 계약기간

- ①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. 단, 노인복지법 3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
가. 계약기간은 입소 시 제출한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 만료일로 한다.

3. 월 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

-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, 비급여 비용은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결정한다.
-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.
- ③ 이용료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정한다.
-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.

4. 신원인수인(보호자,보증인)에 관한 사항

-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(입소자)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.

▶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
-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
(단, 병·의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-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③ 표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▶ 입소자의 의무

-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
-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-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-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

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▶ 입소자의 권리

-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.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.
-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,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.
-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.
-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.

▶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-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-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-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-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
▶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-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-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-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5. 계약의 해제

-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④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-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다른 입소자의 안전 및 생활에 위험이 발생할 때.
-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. 단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, 시설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
-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금액

(31 일기준)

2025.01.01

1등급 1일당 90,450 원

합계금액

2,803,950

일반 (20%)		경감 (12%)		경감 (경감 8%)	
공단 80%	2,243,160	공단 88%	2,467,480	공단 92%	2,579,640
본인 20%	560,790	본인 12%	336,470	본인 8%	224,310
식사,간식	409,200	식사,간식	409,200	식사, 간식	409,200
이미용비	-	이미용비	-	이미용비	-
본인부담총액	969,990	본인부담총액	745,670	본인부담총액	633,510

2등급 1일당 83,910 원

합계금액

2,601,210

일반 (20%)		경감 (12%)		경감 (경감 8%)	
공단 80%	2,080,970	공단 88%	2,289,070	공단 92%	2,393,120
본인 20%	520,240	본인 12%	312,140	본인 8%	208,090
식사,간식	409,200	식사,간식	409,200	식사, 간식	409,200
이미용비	-	이미용비	-	이미용비	-
본인부담총액	929,440	본인부담총액	721,340	본인부담총액	617,290

3~5등급 1일당 79,240 원

합계금액

2,456,440

일반 (20%)		경감 (12%)		경감 (경감 8%)	
공단 80%	1,965,160	공단 88%	2,161,670	공단 92%	2,259,930
본인 20%	491,280	본인 12%	294,770	본인 8%	196,510
식사,간식	409,200	식사,간식	409,200	식사, 간식	409,200
이미용비	-	이미용비	-	이미용비	-
본인부담총액	900,480	본인부담총액	703,970	본인부담총액	605,710